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안덕근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정량표시 의무 제도와 차별성 부족 및 제도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인한 인증기업 지속 감소 등의 사유로 “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(K-마크) 제도”를 폐지하는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,

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(K-마크)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“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(K-마크)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(현행 제38조, 제39조, 제40조, 별표 22, 별표 23, 별표 24 및 별표 25 삭제, 제41조, 제49조, 별표 26, 별표 27 및 별지 28 개정)” 필요가 있음
나. 오류 문구 정정(별표 9 비고 본문 중 “자체검정사업자은”을 “자체검정사업자는”으로 수정) 필요가 있음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4. 22. ~ 6. 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41조 중 “교정이력, 적합성 확인현황”을 “교정이력”으로 한다.

제49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9 비고 본문 중 “자체검정사업자은”을 “자체검정사업자는”으로 한다.

별표 22부터 별표 2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26 제6호를 삭제한다.

별표 27 제1호의다목을 삭제한다.

별표 28 제2호의처목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) 적합성 선언을 한 정량표시상품에 대해서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기적합성선언 관련 규정(별칙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포함

한다)에 따른다. 다만, 자기적합성선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그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제38조(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)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계량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일 것</u> <u>2. 별표 2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합성확인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</u> <u>3. 별표 23에 따른 검사설비를 갖추 것</u> <u>4. 적합성확인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을 정할 것</u>	<u><삭 제></u>
<u>제39조(적합성확인기관의 준수사항)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“적합성확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</u> <u>1. 적합성확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</u> <u>2. 적합성확인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</u> <u>② 법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</u>	<u><삭 제></u>

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기간”이란 별표 24에 따른 기간
을 말한다.

제40조(적합성확인기관의 행정처
분 기준)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
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5
와 같다.

제41조(보고 사항) 법 제49조 각
호 외의 부분에서 “비법정단위
의 단속현황, 계량기 제조업 등
록현황, 형식승인 및 검정 통계,
교정대상 측정기기 교정이력, 적
합성 확인현황 등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관련 자료”란 별표 26에
따른 자료를 말한다.

제49조(권한의 위임) ① 산업통상
자원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에
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
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.

1. ~ 8. (생략)

9.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
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
및 지정신청의 접수

10.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적합
성확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

<삭 제>

제41조(보고 사항) -----

----- 교정이력 -----

-----.

제49조(권한의 위임) ① -----

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<u>무정지명령</u> <u>11.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표시</u> <u>제거의 계획 및 결과 보고의</u> <u>접수</u> 12. ~ 26. (생 략) ② (생 략)	<u><삭 제></u> 12. ~ 26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	
연 락 처	(043) 870 - 5512